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63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김선민·장종태·김준형

강경숙・이해민・조 국

민병덕 · 신장식 · 서왕진

박은정・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연초, 니코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1연초(煙草)나 니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코틴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u> 과 담배	<u>연초, 니코틴</u>
는 몰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